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과태료 기준(안 별표 6 제2호)

-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요금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경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11. 20. ~ 2020. 12.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플랫폼가맹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 액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3호	240
2.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4호	100
3.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 제5호	120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6호	120
5.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8호	100
6.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0호	360
7.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2호	50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3호	360

별표 6 제2호 커목 및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5	300	300	300
--	----------------	-----	-----	-----

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터.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법 94조제1항제3호의6	400	400	4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6